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한 동의

동의연월일 : 2016년 3월 일

동 의 자 : 정 영 수 의원

찬 성 자 : 윤 은 희 의원

□ 주 문

-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함.

□ 제안이유

-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 절차와 현재 운영 절차가 맞지 않아 현실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
- 일부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을 “도지사”라고 표기하고 있어 이를 “교육감”도 병행 표기하여 혼선을 막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의회에 예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에 회부한 후 시정연설 또는 제안설명을 듣고, 소관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하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(안68조 ①항)
- 지방자치단체의장을 “도지사”라고 표기하고 있어 이를 “교육감”도 병행 표기

□ 의안전문 : 붙임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